「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

환경부

환 경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1. 환경보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안전한 폐기물 처리 및 작업환경조성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 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개정('25.3.17)하였습니다.

구 분	개정 前	개정 後('25.9.18 시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 대상 폐기물의 종류)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 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법 각 호 제18조의2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 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법 각 호 제18조의2제1항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3. 인화성 물질(인화점이 1기압에서 섭씨 70도 미만인 물질을 말한다) 함유 폐기물

※ 의료폐기물 중 인화성 물질(자일렌, 포르말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에 해당

3.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전문기관 의뢰 시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자원순환정보→폐기물유해성 메뉴에서 폐기물 종류별 유해성 정보자료(예시)를 참고하시고,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성평가부(032-590-40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각 기관에서는 관내 사업장이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 제공 및 비치 등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 경 부 장 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원순환과장), 부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대구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인천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광주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대전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울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자원순환과장), 경기도지사(자원순환과장), 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환경관리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탄소중립정책과장),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환경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환경관리과장), 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환경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원순환과장), 한강유역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금강유역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원주지방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대구지방환경청장(자원순환과장), 전북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질병관리청장(검역정책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 한국폐기물협회장,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사단법인 한국장례협회,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폐기물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주무관	**박동휘**	행정사무관	**김명연**	과장	전결 2025. 6. 19. **김양동**

협조자

시행 폐자원관리과-1397 (2025. 6. 19.) 접수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 me.go.kr

전화번호 044-201-7362 팩스번호 044-201-7351 / eastsun04@me.go.kr / 대국민 공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